

## 전문계약직 관리세칙

제정 2021.02.17

개정 2023.03.15

개정 2024.03.13

개정 2024.05.14

개정 2025.03.1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전문계약직 직원(이하 “전문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제2조(적용범위)** 전문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전문직이라 함은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직급 및 직위)** 전문직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채용절차)** ① 전문직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축소할 수 있다.

**제6조(채용자격)** 전문직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 정관 제21조 및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8조(계약기간)** ① 전문직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및 업무성과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복무)** 전문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신분변경의 제한)** 전문직은 최초 채용목적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

**제11조(전보 등)** 전문직은 해당 업무 수행 부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다.

**제12조(정년 등)** ①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이 되는 날이 상반기인 경우에는 6월 30일, 하반기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② 전문직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보수 및 연봉)** ① 전문직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초임 연봉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 단,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별 연봉한계액 상한액의 9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3.15.>

③ 시간제로 채용하는 전문직의 초임연봉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주40시간 근무하였을 때 연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23.3.15.>

④ 연봉인상은 매 1년 단위로 성남시장이 매년 결정한 연봉제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 내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

⑤ 보수의 지급방법은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4조(수당)** 수당은 “별표 5” 제 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르며,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05.14.>

**제15조(경영성과급)** ① 경영성과급은 성과연봉시행세칙을 준용하며, 일반직 직급 상단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시간제 전문직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근무성적평정)** ① 전문직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직급 상단에 준하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결과는 연봉 책정, 재계약 체결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제17조(퇴직 및 해고)**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18조(퇴직급여 등)**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교육훈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 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2021.2.1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3.1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13.)**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5.1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7.)**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lt;개정 2024.3.13.&gt;

## 전문계약직 등급 및 직위

등급	직위	비고
가급	총괄매니저 ~ 매니저	일반직 3급 상당
나급	총괄매니저 ~ 매니저	일반직 4급 상당
다급	매니저	일반직 5급 상당

[별표 2]

## 전문계약직 채용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박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공무원 6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박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공무원 7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다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 취득자</li> <li>○ 해당분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li> <li>○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공무원 8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별표 3]

## 전문계약직 재계약(연장) 평가 기준

구분	비중	세부 평가 내용	비고
근무성적평가	30%	근무성적평가 평균점수	총점 70점 미만 계약연장 불가
업무성과	60%	재단 기여도, 직무수행성과 등	
근무태도	10%	청렴도, 책임감, 업무협조성 등	

※ 평가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하며, 연장 여부는 이사장이 최종 결정한다.

[별표 4] &lt;개정 2023.3.15.&gt;

## 전문계약직 초임연봉 기준표

구분	연봉액	비고
가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60퍼센트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	공무원 6급 상당
나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	공무원 6급 상당
다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	공무원 6급 상당

※ 계약기간 연장시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연봉을 재 책정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함.

[별표 5] &lt;개정 2023.3.15., 2024.3.13., 2024.5.14.&gt;

## 제 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금액	비 고
시 간 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0/209 × 시간	
야 간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0/209 × 시간	
휴 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0/209 × 시간	
연 차 수 당	· 통상임금(일급) × 미사용일수	
가족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직급 보조비	· 가급 : 공무원 6급 상당액 · 나급 : 공무원 7급 상당액 · 다급 : 공무원 8급 상당액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